

의안번호	제498호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1월 11일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성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98
----------	-----

발의연월일 : 2024년 1월 11일

발의자 : 조성태, 이상정, 김정일,
박봉순, 안치영, 안지윤,
이정범

1. 제안이유

- 충청북도 내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조례안 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비용추계 : 붙임
- 협의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조례안 예고 : 예고 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다자녀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 및 양육 부담 완화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자녀가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자녀가정의 실태조사
2. 양육 및 보육 지원

3.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지원
4.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
5. 교육비 지원
6. 문화 및 복지 혜택 지원
7. 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입장료, 이용료, 주차료 등 감면
8. 공공요금 감면
9.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다자녀카드 발급 등) ① 도지사는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기 위해 다자녀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자녀카드 가맹점 확대를 위해 실적이 우수한 가맹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다자녀카드 발급, 우수 가맹점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 운영) 도지사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수립 등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다자녀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도지사는 각종 언론매체,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모범 다자녀가정
2. 다자녀가정 지원에 이바지한 유공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다자녀가정 친화 분위기 조성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하는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①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금액·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조사 및 연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자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문화·복지·주택·교통 등 관련 지원 정책

다. 그 밖에 인구감소 및 유출 극복과 인구유입을 위한 각종 정책

2. “다자녀가정”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8조(인구정책사업) ① 도지사는 인구구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임신·출산·양육·유입인구에 대한 지원사업

2.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
 3. 일자리·문화·교육·복지·주택·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4.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3.4.7.>
- ③ 삭제 <2023.4.7.>

□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1조(다자녀카드 발급 등) ① 도지사는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기 위해 다자녀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다자녀카드 가맹점 확대를 위해 실적이 우수한 가맹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다자녀카드 발급, 우수 가맹점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도내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
2. 비용 발생 요인 : 다자녀가정 우대정책 및 정책자문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발생
3. 관련조문

○ 안 제6조(지원사업), 안 제7조(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 운영)

4. 비용 추계결과

○ 추계의 전제

－ 첫만남이용권(연간 둘째아 이상 국도비 추가지원금) : $2,400\text{명} \times 1,000\text{천원} \times 80\% = 1,920,000\text{천원}$

* 매칭비율('24년도 기준) : 국비 71%, 도비 9%, 시군비 20%

- 지원규모 : '24년 국비 내시 기준인원(둘째아이상 2,360명) 수준 반영

- 지원금액 : (첫째아) 2백만원 → (둘째아 이상) 3백만원 (**1백만원 추가지원**)

－ 정책자문단 참석수당(연간) : $100\text{천원} \times 15\text{명} \times 2\text{회} = 3,000\text{천원}$ (전액도비)

* 참석수당 : 기본수당(2시간 이내) 100천원 / 인원수 : 통상적 수준의 위원회 구성원수 반영(15명)

－ 다자녀카드 가맹점 표지판 제작('24.일몰사업)

· $5,000\text{개} \times 3\text{천원} = 15,000\text{천원}$ (전액도비)

○ 추계 결과 : ('24년) 1,938,000천원, ('25년 이후) 연간 1,923,000천원 소요

* 향후, 다자녀가정 지원시책 발굴·추진상황에 따라 비용추계 변경(증액) 가능

○ 재원조달방안 : 국고보조금 및 도비 등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세 입	9,630,000	1,938,000	1,923,000	1,923,000	1,923,000	1,923,000
첫만남이용권 국고보조	8,520,000	1,704,000	1,704,000	1,704,000	1,704,000	1,704,000
지방세 수입	1,110,000	234,000	219,000	219,000	219,000	219,000
세 출	9,630,000	1,938,000	1,923,000	1,923,000	1,923,000	1,923,000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	9,600,000	1,920,000	1,920,000	1,920,000	1,920,000	1,920,000
정책자문단 운영	15,000	3,000	3,000	3,000	3,000	3,000
다자녀카드 가맹점 지원	15,000	15,000	-	-	-	-
재원 조달	9,630,000	1,938,000	1,923,000	1,923,000	1,923,000	1,923,000
의존재원 보조금	8,520,000	1,704,000	1,704,000	1,704,000	1,704,000	1,704,000
자체수입 지방세	1,110,000	234,000	219,000	219,000	219,000	219,000